A photograph of a red car body on a ship's deck. The car body is positioned on a yellow and black striped platform. In the background, a large blue and red cargo ship is visible, with several yellow and blue shipping containers stacked on its deck. A large white ampersand watermark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.

AML의 시작,
고객확인제도(실소유자 확인)


November 2019


(주) 나이스디앤비


Overview


Overview – 동향

※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제재 부과 현황
 자료: 금융위원회

 **HSBC** - 2012년 제재대상국과 거래
 - 제재 처분: 19.2억 달러

 **BNP PARIBAS** - 2014년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
 이란, 수단, 쿠바 국적 기업과 1,900억
 달러 거래 은폐
 - 제재 처분: 89.7억 달러

 **Standard Chartered** - 2014년 자금세탁 고위험고객과 거래
 - 제재 처분: 3억달러

 **COMMERZBANK** - 2015년 제재대상국(이란) 기업과 거래
 - 제재 처분: 14.5억 달러

 **megabank**

- 2016년 자금세탁방지 미이행
 조사회피지역에서의 의심거래
 미보고, 담당자 전문성 결여,
 관련 내규 미흡
 - 제재 처분: 1.8억 달러

 **中国农业银行**
 AGRICULTURAL BANK OF CHINA

- 2016년 자금세탁방지 미이행
 의심거래 미보고
 - 제재 처분: 2.15억 달러


 **NongHyup Bank**

- 2017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
 내부통제시스템 미비
 - 제재 처분: 1,100만 달러



Overview – 동향



 금융위원회	<h2>보도자료</h2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9.12(화) 조간	배포	2017.9.11(월)
책임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(02-2100-1730)	담당자	송 희 경 사무관 (02-2100-1721)	
	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강 석 민 (02-2100-1750)		정 진 구 사무관 (02-2100-1751)	

제 목 :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

-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· 독립적 감사 · 임직원 신원확인 등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「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」에 포함 -

□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

○ 강화된 FATF 국제기준^{*}(12년)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(Risk-Based Approach)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

* FATF :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, 「자금세탁 및 테러·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」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

○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,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

-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

*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.8억달러 부과(16.8월),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(17.1월)

Overview – 동향: 국내 법규 주요 개정 사항

1 AML 관련 내부통제의무 강화

구분	주요 내용
특정금융정보법	<p>금융회사가 AML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금융회사의 감독의무를 규정 자료 보존의무 규정 법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강화 (1,000만 → 3,000만원 ~ 1억원)</p>
동법 시행령	<p>금융지주, 집합투자업자 등의 내부 통제 수립의무 면제조항 삭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AML 검사를 금감원에도 위임 전자금융업자, 대부업자(자산 500억원 이상)에 대해 AML 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</p>
특정금융거래정보 감독규정	<p>금융회사(여신전문금융회사 등) 내부보고체제 수립의무 등에 대한 면제조항 삭제</p>
지배구조 감독규정	<p>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AML 의무를 규정</p>
AML 검사 제재규정	<p>11개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를 마련</p>

Overview – 동향: 국내 법규 주요 개정 사항 (계속)

2 고객확인(CDD)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(CTR)

구분	주요 내용
등법시행령	<p>CDD 관련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 명확화 및 기준금액 강화 *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기준금액: (원화) 2,000만원 → 1,500만원, (외국환) 10,000달러 (전신송금)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CTR 의무를 부과 CTR 기준 금액을 2,0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하향</p>

3 가상통화 관련 금융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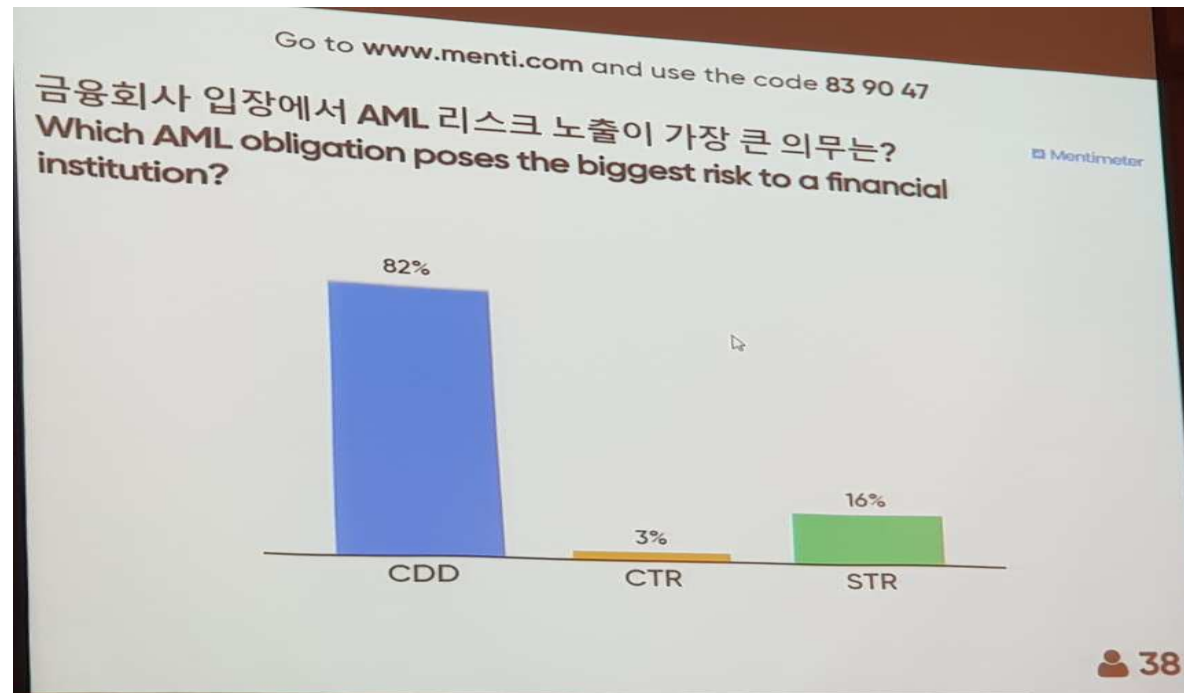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
가상통화 관련 AML 가이드 라인	2020년 7월 까지 연장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 관련 거래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(행정지도)
특정금융정보법	국회 계류 중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취급업소를 고객으로 둔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강화 등

고객 확인 제도(CDD: Customer Due Diligence)
- 실제 소유자 (Beneficial Ownership)

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(의무)

CDD(Customer Due Diligence) : 고객확인제도	CTR(Currency Transaction Report) :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	STR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 : 의심거래 보고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-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(EDD)을 수행 - 법인의 실제 소유자 중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일률적으로 보고 - 5천만원(2006년) → 1천만원(2019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 - 5천만원(2001년) → 폐지(2013년)

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(의무) – 고객확인제도(CDD)



자료: ACAMS 서울 심포지엄

고객확인제도 - 개요

구분		기본 확인 내용		추가 확인 내용
개인	내국인	실지명의, 주소 및 연락처	실제 소유자 (실지명의 및 국적)	직업(업종), 거래목적, 자금원천
	외국인 비거주자	실지명의, 주소 및 연락처 + 국적, 국내의 거소		
법인	영리법인	실지명의, 업종,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, 연락처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	실제 소유자 (성명, 생년월일, 국적)	거래목적, 자금원천
	비영리단체	실지명의, 설립목적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연락처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		
	외국법인, 단체	실지명의, 설립목적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연락처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 + 국내의 사무소 소재지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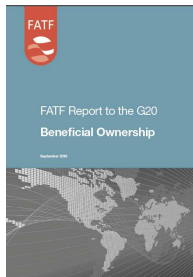
고객확인제도 – 법인의 실제 소유자 확인

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	FATF 권고안 10. Customer Management
<p>- 다음의 3단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</p> <p>1단계: 100분의 25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2단계: ①, ②,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/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(자연인)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상기 2가지 외에 법인/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3단계: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p> <p>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징구함. (고객 신고주의 원칙)</p>	<p>10. Customer Management</p> <p>Customer Due Diligence to be taken as follows</p> <p>(a) <u>Confirm and verify the identity of the customer using documents, data or information based on reliable independent source.</u> (b) <u>Take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beneficiary's identity</u> so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can identify who the beneficiary is. This should include the financial institution's understanding of the customer's ownership and management structure for legal entities and legal arrangements.</p> <p>CDD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함</p> <p>(a) 신뢰성 있고 독립적인 문서,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인하고 신원을 검증할 것 (b) 합리적인 조치들을 통해 실소유자의 확인을 검증해야 함</p>

! 외국 법인이 제출한 자료(Certificate of incorporation, Shareholder's list 등) 가 허위이고 결과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해외 제재대상(특히 OFAC)에 해당한다면 Risk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

실제 소유자 정보의 중요성

1 FATF Report to the G20 on beneficial Ownership



- G20 members must:
- ① Fully **implement** FATF Standards on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without further delay.
 - ② Take action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 to **address barriers to information-sharing**
 - ③ Take action to **facilitate** the timely sharing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at the **domestic and international** level

2 FATF 10. Customer Due Diligence

- (a) Confirm and verify the identity of the customer using documents, data or information based on reliable independent source.
- (b) Take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beneficiary's identity

2 자금세탁방지의 기초, 고객과 실제 소유자 확인



실제 소유자 정보의 업무 적용의 한계

1 정보 수집의 어려움

- 공시되어 있는 주주정보 부족
- 공개 요청에 대한 비협조
- 위험도가 높은 특히, 위험국가(FATF 비협조, 조세피난처)일수록 RISK 대비, 정보 소스 부족

2 복잡한 지배구조 파악

-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단위의 지배구조 파악 어려움
- 지속적인 Ownership 변동에 대한 대응 불가

3 주요 규제 기관에서 설정한 Beneficial Ownership 기준이 상이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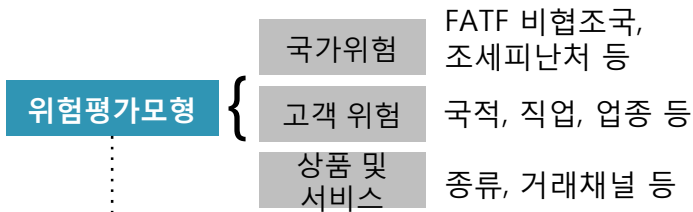
국내 법률	25%	FATCA	a 10% ownership threshold or below for Foreign Investment Vehicles
OFAC	50% rule	4th EU AML Directive	25% shares or voting rights in a corporate entity.
FinCEN Final Rule	25% ownership threshold	Common Reporting Standards	SEC 506(e) disclosure
Politically-Exposed Persons (PEP)	a threshold as low as 1% or 0.01% is required		

실제 소유자 정보의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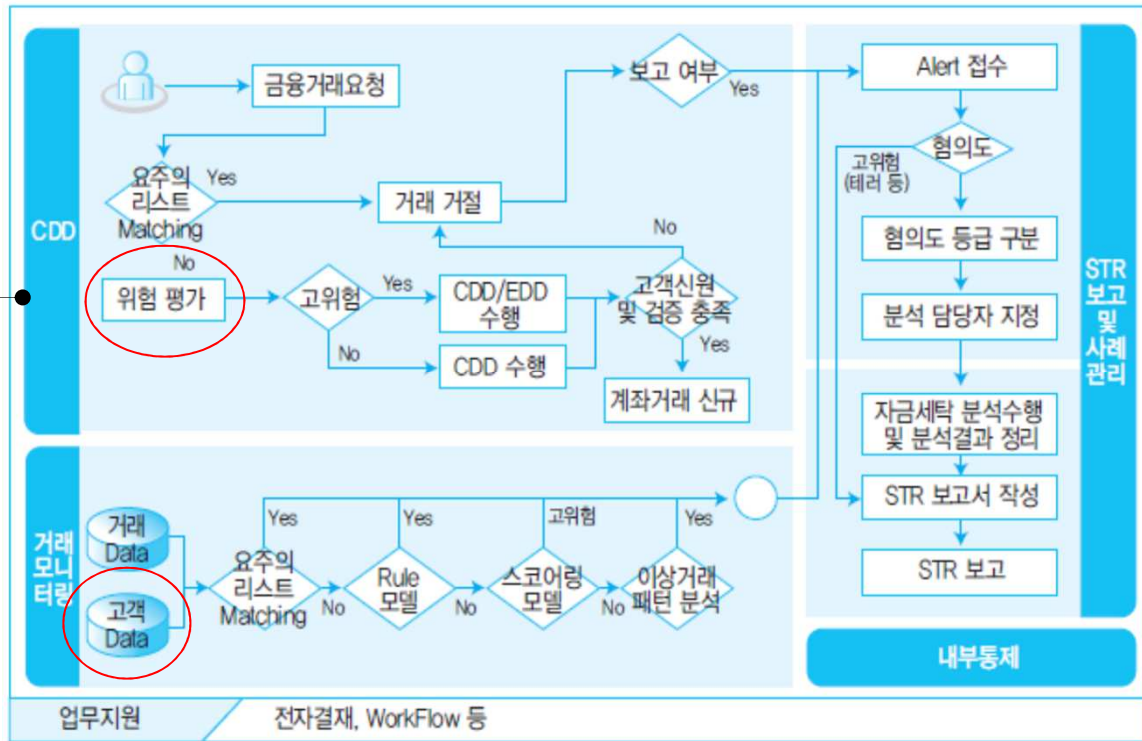
※ FIU 업무 규정
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 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**고객확인**에 활용해야 하며,
 - 이때 국가위험, **고객유형** 및 상품/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해야 함

※ FATF 권고안 1. 위험 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

※ 위험평가 모형 예시



Risk Score → 일정점수 이상: 고위험
 일정점수 미만: 저위험



D&B 실제 소유자 정보

Family Tree

“Who does ABC Company SA own?”

50%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회사, 자회사 연결정보
 모회사에 연결된 두가지 기업 형태: 자회사/지사

ALTERNATIVE LINKA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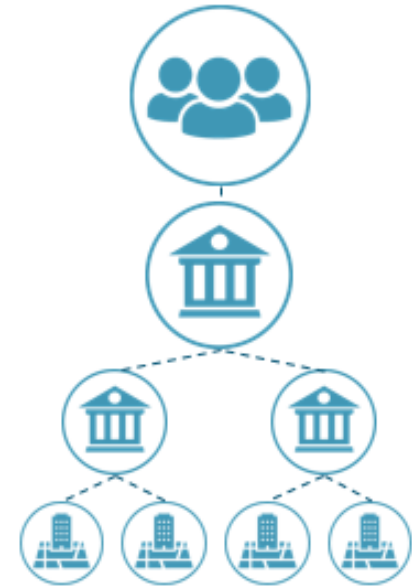
“Does ABC Company SA have minority ownership relationships?”

Family Tree 에서 파악되지 않는 기타 기업 형태
 소액주주, 합작법인 등

BENEFICIAL OWNERSH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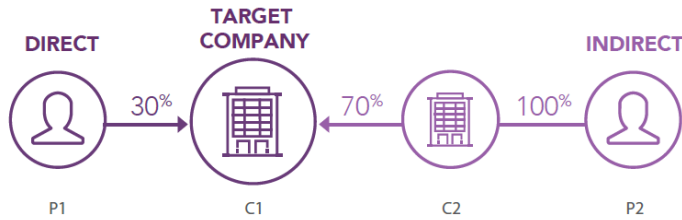
“Who really owns ABC Company SA?”

50% 미만의 소액주주를 포함하여, 기업 또는 개인의 형태 모두 가능.
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/간접 소유자 존재를 의미하며, 최소 0.1%의 소유권 비율까지 계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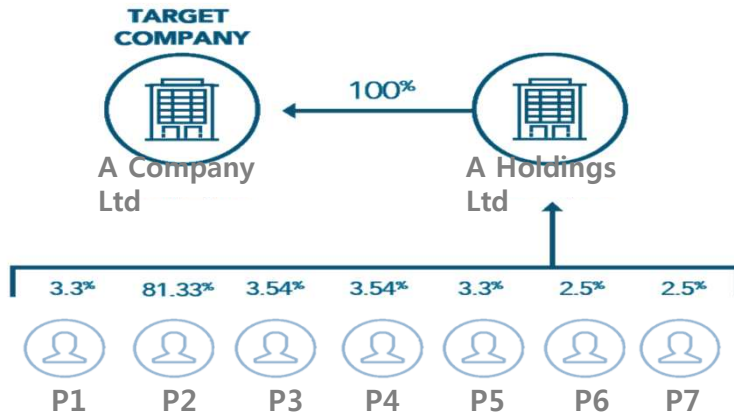


220+ 국가 커버리지 / 7천 2백만개 기업 대상 실제 소유자 정보 제공
 총 1억 6백만개 이상의 주주 정보 보유

D&B 실제 소유자 정보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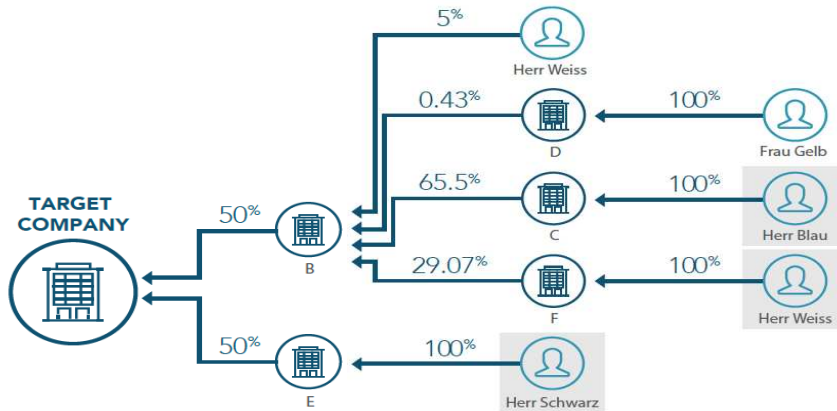


직간접 소유관계: 각 지배구조 파악
 - P1은 C1 기업의 지분을 30% 보유한 직접 소유주
 - P2는 C1 기업의 지분을 70% 보유한 간접 소유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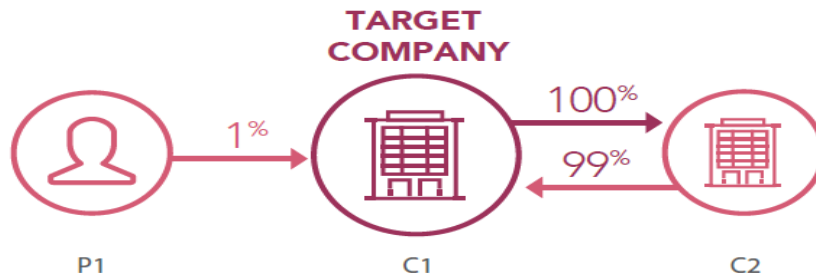


개인 주주들의 간접 소유관계 - 단순 버전
 - P2라는 개인이 A Company의 지분을 81.3% 보유

D&B 실제 소유자 정보 예시 - 계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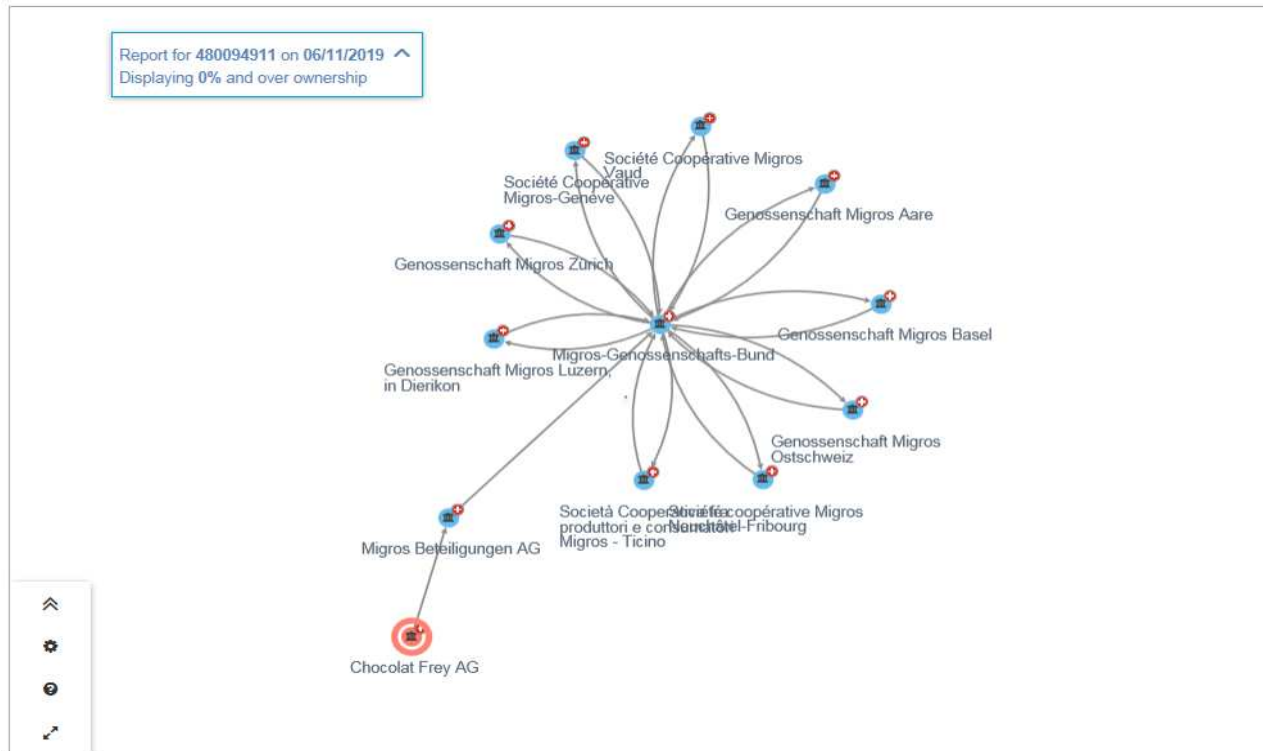
- 개인 주주들의 간접 소유관계 - 복잡한 버전 I
- Herr Blau 는 대상 기업의 32.8% (50% X 65.5%)
 - Herr Weiss는 대상 기업의 14.5%
 - Herr Schwarz는 50% 소유



- 개인 주주들의 간접 소유 관계 - 복잡한 버전 II
- P1 실제소유주로 직접적으로는 1% 지분 보유지만
 - 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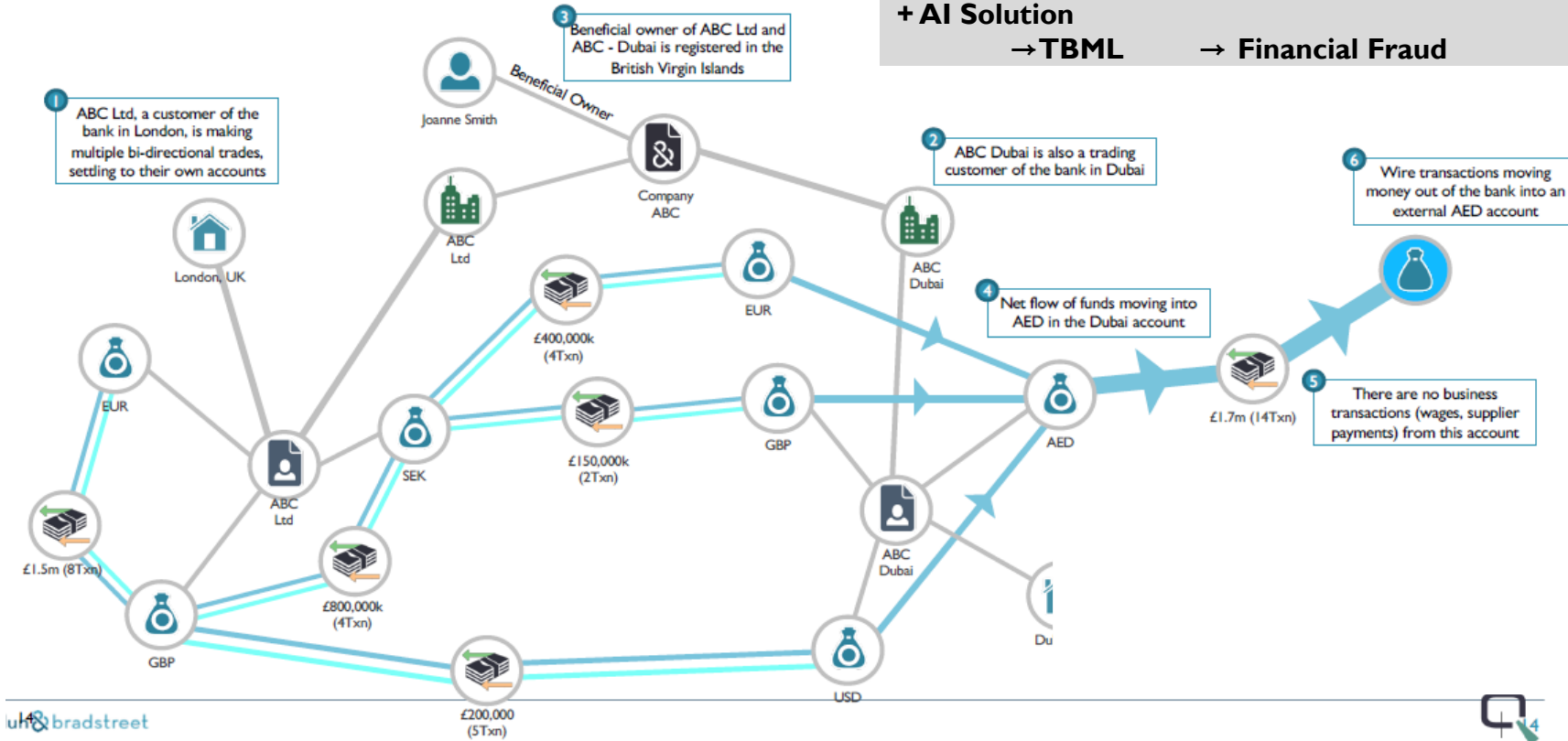
D&B 실제 소유자 정보 예시 - 계속

BENEFICIAL OWNERSHIP STRUCTURE



[Case Study] 영국 B은행

D&B 기업정보(실제 소유자)
 + Dow Jones 제재정보, 인물, 뉴스, 선박, 물품 등
 + 기타 Data (은행 내부정보, 기타 3rd party)
 + AI Solution
 → TBML → Financial Fraud



D&B(Dun & Bradstreet) 소개



About D&B

- 1841년 설립
- 세계 최초의 기업신용평가회사

D&B Database

- 전세계 약 3억 2천만 개 이상 기업 정보 보유
 - 246 market coverage, 매일 5백만 건 이상의 기업 정보 업데이트
- D-U-N-S ® Number를 기준 코드로 단일화된 기업정보(Data) 관리 체계
- D&B Worldwide Network
 - 전세계 240여 국에 D&B 지사 또는 현지 파트너

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Sanctions List Search

OFAC 제재 대상 세부 정보에 해당 국가 ID 등과 함께 “DUNS Number” 제공

Download the Consolidated Non-SDN List Program Code Key

Details:

Type:	Entity	List:	SDN
Entity Name:	ADJ TRADING LIMITED	Program:	LIBYA3
		Remarks:	(Linked To: DEBONO, Darren Linked To: ARAFA, Ahmed Ibrahim Hassan Ahmed Linked To: BEN KHALIFA, Fahm)

Identifications:

Type	ID#	Country	Issue Date	Expire Date
Tax ID No.	18589120	Malta		
Trade License No.	C 41310	Malta		
D-U-N-S Number	52-023-7366			

Building high-quality data from enormous data source to meet customer needs

Provide solutions that meets customer usage

Provide optimal solution to customers with the partners

나이스디앤비(NICE D&B Co.,Ltd) 소개

“국내 1위 금융인프라그룹 + 세계 최대 기업조사정보 전문기업=나이스디앤비”



주요사업

국내기업 신용인증(평가) 서비스

- 기술신용평가(TCB)
-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
- 대기업 협력사 신용평가

무역정책 지원 사원(수출지원)

-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 DB 구축
- KITA CBT 마케팅 센터 운영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 사업
- 해외시장 맞춤 조사(해외시장 보고서)

해외기업 정보 서비스

- Business Information Report
- 국내외 기업 Master DB 구축 및 정비
- 조회서비스 (Hoover's Online, GRS)
- Compliance(UBO, Onboard), API 등

국내기업 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

- 조회서비스(Creport)
- 국내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
- : 부실거래 예측관리, 조기경보, 재무분석, 여신심사 등

감사 합니다